

부속서 3-가
품목별 원산지 규정

HS 2017	품목명	품목별 원산지 규정
제1부 살아 있는 동물과 동물성 생산품		
제1류	살아 있는 동물	완전생산기준
제2류	육과 식용 설육(脛肉)	완전생산기준
제3류 주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과 그 밖의 수생 무척추동물은 비원산지 치어 또는 자어로부터 양식된 경우에도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된다.[치어란 후기자어기에 있는 덩이 자란 물고기를 말하며, 핑거링스(fingerlings), 파(parr), 스몰트(smolts) 및 엘버(elvers)를 포함한다]		
제3류	어류·갑각류·연체동물과 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	완전생산기준
제4류	낙농품, 새의 알, 천연꿀, 다른 류로 분류되지 않은 식용인 동물성 생산품	완전생산기준
제5류	다른 류로 분류되지 않은 동물성 생산품	완전생산기준
제2부 식물성 생산품		
제2부 주 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배한 농산물 및 원예상품은 비당사국에서 수입한 씨앗, 인경, 근경, 삽수, 접지, 접목, 싹, 봉오리 또는 그 밖의 산 식물의 일부에서 재배한 경우에도 그 당사국 영역의 원산지 상품으로 취급된다.		
제6류	살아 있는 수목과 그 밖의 식물, 인경(鱗莖)·뿌리와 이와 유사한 물품, 절화(切花)와 장식용 잎	완전생산기준
제7류	식용의 채소·뿌리·괴경(塊莖)	완전생산기준
제8류	식용의 과실과 견과류, 감귤류·멜론의 껍질	완전생산기준
제9류	커피·차·마테(maté)·향신료	완전생산기준

HS 2017	품목명	품목별 원산지 규정
제10류	곡물	완전생산기준
제11류	제분공업의 생산품과 맥아, 전분, 이눌린(inulin), 밀의 글루텐(gluten)	2단위 세번변경기준(제 0701호, 제0710호, 제 0714호 또는 제1006호 의 것은 제외한다)
제12류	채유(採油)에 적합한 종자와 과실, 각종 종자와 과실, 공업용·의약용 식물, 짚과 사료용 식물	완전생산기준
제13류	락(lac), 검·수지·그 밖의 식물성 수액과 추출물(extract)	완전생산기준
제14류	식물성 편조물(編組物)용 재료와 다른 류로 분류되지 않은 식물성 생산품	완전생산기준
제3부 동물성·식물성 지방과 기름 및 이들의 분해생산물, 조제한 식용 지방과 동물성·식물성 납(蠟)		
제15류	동물성·식물성 지방과 기름 및 이들의 분해 생산물, 조제한 식용 지방과 동물성·식물성 납(蠟)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제4부 조제식료품과 음료·알코올·식초 및 담배와 제조한 담배대용물		
ex 제16류	육류·어류·갑각류·연체동물이나 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의 조제품. 다음을 제외함.	2단위 세번변경기준
1603	육·어류·갑각류·연체동물이나 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의 추출물(extract) 과즙	2단위 세번변경기준(제 3류의 것은 제외한다)
ex 1604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어류, 캐비아, 어란(魚卵)으로 조제한 캐비아 대용물. 다음을 제외함.	2단위 세번변경기준(제 3류의 것은 제외한다)
1604.20	그 밖의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어류	2단위 세번변경기준

HS 2017	품목명	품목별 원산지 규정
ex 1605 1605.54 1605.59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갑각류·연체동물·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 다음을 제외함. 갑오징어와 오징어 기타	2단위 세번변경기준(제3류의 것은 제외한다) 2단위 세번변경기준 2단위 세번변경기준
ex 제17류 1703 1704	당류(糖類)와 설탕과자. 다음을 제외함. 당밀(糖蜜) [당류(糖類)를 추출하거나 정제할 때 생긴 것으로 한정한다] 설탕과자(백색 초콜릿을 포함하며, 코코아를 함유한 것은 제외한다)	2단위 세번변경기준 2단위 세번변경기준(제12류의 것은 제외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ex 제18류 1801	코코아와 그 조제품. 다음을 제외함. 코코아두(원래 모양이나 부순 것으로서 생 것이나 볶은 것으로 한정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단위 세번변경기준
ex 제19류 1901.10 1905	곡물·고운 가루·전분·밀크의 조제품과 베이커리 제품. 다음을 제외함. 영유아·어린이용 조제 식료품(소매용으로 한정한다) 빵·파이·케이크·비스킷과 그 밖의 베이커리 제품(코코아를 함유하였는지에 상관없다), 성찬용 웨이퍼·제약용에 적합한 빈 캡슐·실링웨이퍼(sealing wafer)·라이스페이퍼(rice paper)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단위 세번변경기준(제4류의 것은 제외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ex 제20류 2003.90	채소·과실·견과류나 식물의 그 밖의 부분의 조제품. 다음을 제외함. 기타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단위 세번변경기준

HS 2017	품목명	품목별 원산지 규정
2004.10	감자	2단위 세번변경기준
2005.20	감자	2단위 세번변경기준
2005.91	죽순	2단위 세번변경기준
2005.99	기타	2단위 세번변경기준
2006.00	설탕으로 보존처리한 채소·과실·견과류·과피와 식물의 그 밖의 부분[드레인한 (drained) 것, 설탕을 입히거나 설탕에 절인 것]	2단위 세번변경기준 1. 김에 대해서는 2단위 세번변경기준(소호 제1212.21호 또는 제 1212.29호의 것은 제외한다), 2. 다른 상품에 대해서는 2단위 세번변경기준
ex 제21류	각종 조제 식료품. 다음을 제외함.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소호 제 1211.20호 또는 제 1302.19호의 것은 제외한다)
2106.90	기타	
ex 제22류	음료·주류·식초. 다음을 제외함.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HS 2017	품목명	품목별 원산지 규정
2202.99	기타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소호 제 1211.20호 또는 제 1302.19호의 것은 제외한다)
2204.21	2리터 이하의 용기에 넣은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2204.22	2리터 초과 10리터 이하의 용기에 넣은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2204.29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2205	베르무트(vermouth)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포도주[생포도로 제조한 것으로서 식물이나 방향성(芳香性) 물질로 맛이나 향을 첨가한 것으로 한정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2207	변성하지 않은 에틸알코올(알코올의 용량이 전 용량의 100분의 80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변성 에틸알코올, 그 밖의 변성 주정(알코올의 용량은 상관없다)	2단위 세번변경기준(제 1703호의 것은 제외한다)
ex 제23류	식품 공업에서 생기는 잔재물과 웨이스트(waste), 조제 사료. 다음을 제외함.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309	사료용 조제품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ex 제24류	담배와 제조한 담배 대용물. 다음을 제외함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401	잎담배와 담배 부산물	2단위 세번변경기준
제5부 광물성 생산품		
ex 제25류	소금, 황, 토석류(土石類), 석고·석회·시멘트. 다음을 제외함.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HS 2017	품목명	품목별 원산지 규정
2501	소금(식탁염과 변성염을 포함한다), 순염화나트륨[수용액(水溶液)인지 또는 고결(固結)방지제나 유동체를 첨가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과 바닷물.	이상일 것 2단위 세번변경기준
2514	슬레이트[툽질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거칠게 다듬거나 단순히 절단하여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블록 모양이나 슬래브 모양으로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2516	화강암·반암(斑巖)·현무암·사암과 그 밖의 석비(石碑)용·건축용 암석[툽질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거칠게 다듬거나 단순히 절단하여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블록 모양이나 슬래브 모양으로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2517.49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제26류	광(鑛)·슬래그(slag)·회(灰)	4단위 세번변경기준

HS 2017	품목명	품목별 원산지 규정
<p>제27류 주</p> <p>주 1. 이 류의 목적상, “화학반응”은 원산지 상품의 지위를 부여한다. 화학반응이란 분자 내 결합이 깨지고 새로운 분자 내 결합 생성에 의하거나 분자 내 원자의 공간배열을 변경함으로써 새로운 구조를 가진 분자가 되는 공정(생화학 공정을 포함한다)을 말한다.</p> <p>다음은 이 정의의 목적상 화학반응을 구성하지 않는다.</p> <p>가. 물 또는 다른 용제에 용해된 것 나. 용제(용매물을 포함한다)의 제거, 또는 다. 결정수의 첨가 또는 제거</p> <p>주 2. 제2710호의 목적상, 다음의 공정들은 원산지 상품의 지위를 부여한다.</p> <p>가. 상압증류법: 석유가 증류탑에서 비등점에 따라 분획되는 분리공정. 그 후 증기가 상이한 액화 분획물로 응축되며, 액화석유가스, 나프타, 휘발유, 등유, 디젤(난방유), 경유 그리고 윤활유 기유가 석유의 상압증류법으로 생산된다.</p> <p>나. 감압증류법: 대기압보다 낮지만 분자증류법만큼 낮지는 않은 압력에서의 증류. 감압증류법은 석유에 포함된 중질 증류액과 같이 비등점이 높은 열에 민감한 제품을 증류하기 위하여 사용되며, 이를 통해 경질·중질 감압경유 및 잔사유를 얻는다. 일부 정유공장에서는 윤활유의 주성분을 얻기 위하여 경유가 추가로 처리될 수 있다.</p> <p>다. 촉매 수처리: 특수 촉매가 존재하는 고온 및 압력에서 수소로 석유 유도체를 분해 및/또는 처리하는 것. 촉매 수처리는 수소 분해 및 수소 처리를 포함한다.</p> <p>라. 개질(촉매 개질): 나프타의 비등 범위에 있는 분자를 재배열하여 더 높은 옥탄 아로마틱(예: 가솔린 수율을 희생하여 안티녹(anti-knock)제의 품질 개선)을 형성하는 것으로 구성된다. 주요 생성물 중 하나는 촉매 개질로, 가솔린의 혼합 성분으로 사용된다. 이 과정에서 수소를 부산물로 얻는다.</p> <p>마. 알킬화: 아이소파라핀과 올레핀을 촉매적으로 결합하여 고옥탄 가솔린을 얻는 과정</p> <p>바. 분해: 열에 의한 유기 화합물의 분자 분해 및 재결합을 수반하는 정제 공정으로,</p>		

HS 2017	품목명	품목별 원산지 규정
<p>이들이 결합하여 모터 연료, 단량체 등을 구성하기에 보다 적합한 분자를 형성한다.</p> <p>사. 코킹: 감소된 원유, 분해 잔류물, 타르 및 셰일 오일과 같이 경제적 가치가 낮은 중질 잔류 탄화수소가 고온에 의하여 탄소로 전환되는 열분해 공정으로, 또한 정유공장의 다른 공정 단위의 공급 원료로 사용될 준비가 된 낮은 비등 온도의 탄화수소 분획이 최종적으로 더 높은 부가 가치의 제품으로 전환되는 공정이다. 그리고</p> <p>아. 이성질화: 등분자 구조를 가진 탄화수소가 해당 이성질체로 변환되는 석유 정제 공정</p> <p>주 3. 제2710호에서, “직접 혼합”은 탱크에 저장된 상이한 가공 단위 및 성분의 석유 혼합물들이 제2710호에 분류된 소정의 파라미터를 갖는 완성품을 생성하기 위하여 결합되는 정제 공정을 말한다.</p>		
제27류	광물성 연료·광물유(鑛物油)와 이들의 증류물, 역청(瀝靑)물질, 광물성 왁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p style="text-align: center;">제6부</p> <p style="text-align: center;">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의 생산품</p> <p>제6부 주</p> <p>이 부의 목적상, “화학반응”은 원산지 상품의 지위를 부여한다. 화학반응이란 분자 내 결합이 깨지고 새로운 분자 내 결합 생성에 의하거나 분자 내 원자의 공간배열을 변경함으로써 새로운 구조를 가진 분자가 되는 공정(생화학 공정을 포함한다)을 말한다.</p> <p>다음은 이 정의의 목적상 화학반응을 구성하지 않는다.</p> <p>가. 물 또는 다른 용제에 용해된 것</p> <p>나. 용제(용매물을 포함한다)의 제거, 또는</p> <p>다. 결정수의 첨가 또는 제거</p>		
ex 제28류	무기화학품, 귀금속·희토류(稀土類)금속·방사성원소·동위원소의 유기화합물이나 무기화합물. 다음을 제외함.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HS 2017	품목명	품목별 원산지 규정
2804.61	규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99.99 이상인 것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제29류	유기화합품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ex 제30류	<p>의료용품. 다음을 제외함.</p> <p>의약품[혼합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치료용이나 예방용의 것으로서 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피부 투여의 형식을 취한 것을 포함한다)과 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을 한 것으로 한정하며, 제3002호·제3005호·제300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p>	<p>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p> <p>4단위 세번변경기준(제3003호의 것은 제외한다) 또는 당사국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p>
ex 제31류	<p>비료. 다음을 제외함.</p> <p>광물성 비료나 화학비료(비료의 필수요소인 질소·인·칼륨 중 두 가지나 세 가지를 함유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그 밖의 비료, 이 류에 열거한 물품을 등글넓적한(tablet) 모양이나 이와 유사한 모양으로 한 것이거나 용기를 포함한 한 개의 총중량이 10킬로그램 이하로 포장한 것</p>	<p>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p> <p>4단위 세번변경기준(제3102호부터 제3104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 또는 당사국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p>
ex 제32류	유연용·염색용 추출물(extract), 탄닌과 이들의 유도체, 염료·안료와 그 밖의 착색제, 페인트·바니시(vernish), 퍼티(putty)와 그 밖의 매스틱(mastic), 잉크. 다음을 제외함.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3204	합성 유기착색제(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이것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이 류의 주 제3호의 것으로 한정한다), 형광증백제(螢光増白劑)나 루미노퍼(luminophore)로 사용되는 종류의 합성유기생산물(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HS 2017	품목명	품목별 원산지 규정
3206	<p>다)</p> <p>그 밖의 착색제와 조제품(제3203호·제3204호·제3205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하며, 이 류의 주 제3호의 것으로 한정한다), 루미노퍼(luminophore)로 사용되는 무기물(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p>	<p>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p>
ex 제33류 3301.90	<p>정유(essential oil)와 레지노이드(resinoid), 조제향료와 화장품·화장용품. 다음을 제외함.</p> <p>기타</p>	<p>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p> <p>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소호 제 1211.20호 또는 제 1302.19호의 것은 제외한다)</p>
제34류	<p>비누·유기계면활성제·조제 세제·조제 운활제·인조 왁스·조제 왁스·광택용이나 연마용 조제품·양초와 이와 유사한 물품·조형용 페이스트(paste)·치과용 왁스와 플라스터(plaster)를 기본 재료로 한 치과용 조제품</p>	<p>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p>
제35류	<p>단백질계 물질, 변성전분, 글루(glue), 효소</p>	<p>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p>
제36류	<p>화약류, 화공품, 성냥, 발화성 합금, 특정 가연성 조제품</p>	<p>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p>

HS 2017	품목명	품목별 원산지 규정
제37류	사진용이나 영화용 재료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ex 제38류 3825	<p>각종 화학공업 생산품. 다음을 제외함.</p> <p>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잔재물, 생활폐기물, 하수 찌꺼기, 이 류의 주 제6호의 그 밖의 폐기물</p>	<p>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p> <p>2단위 세번변경기준(제28류, 제37류, 제40류 또는 제90류의 것은 제외한다)</p>
<p>제7부</p> <p>플라스틱과 그 제품, 고무와 그 제품</p> <p>제7부 주</p> <p>이 부의 목적상, “화학반응”은 원산지 상품의 지위를 부여한다. 화학반응이란 분자 내 결합이 깨지고 새로운 분자 내 결합 생성에 의하거나 분자 내 원자의 공간배열을 변경함으로써 새로운 구조를 가진 분자가 되는 공정(생화학 공정을 포함한다)을 말한다.</p> <p>다음은 이 정의의 목적상 화학반응을 구성하지 않는다.</p> <p>가. 물 또는 다른 용제에 용해된 것</p> <p>나. 용제(용매물을 포함한다)의 제거, 또는</p> <p>다. 결정수의 첨가 또는 제거</p>		
제39류	플라스틱과 그 제품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제40류	고무와 그 제품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HS 2017	품목명	품목별 원산지 규정
제8부 원피·가죽·모피와 이들의 제품, 마구, 여행용구·핸드백과 이와 유사한 용기, 동물 거트(gut) [누에의 거트(gut)는 제외한다]의 제품		
제41류	원피(모피는 제외한다)와 가죽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제42류	가죽제품, 마구, 여행용구·핸드백과 이와 유사한 용기, 동물 거트(gut) [누에의 거트(gut)는 제외한다]의 제품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제43류	모피·인조모피와 이들의 제품	4단위 세번변경기준
제9부 목재와 그 제품, 목탄, 코르크와 그 제품, 짚·에스파르토나 그 밖의 조물(組物) 재료의 제품, 바구니 세공물(籠細工物)과 지조세공물(枝條細工物)		
제44류	목재와 그 제품, 목탄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제45류	코르크(cork)와 그 제품	4단위 세번변경기준
제46류	짚·에스파르토(esparto)나 그 밖의 조물 재료의 제품, 바구니 세공물(basketware)과 지조세공물(枝條細工物)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제10부 목재나 그 밖의 섬유질 셀룰로오스재료의 펄프, 회수한 종이·판지[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종이·판지와 이들의 제품		
제47류	목재나 그 밖의 섬유질 셀룰로오스재료의 펄프, 회수한 종이·판지[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제48류	종이와 판지, 제지용 펄프·종이·판지의 제품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HS 2017	품목명	품목별 원산지 규정
제49류	인쇄서적·신문·회화·그 밖의 인쇄물, 수제(手製)문서·타자문서·도면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제11부 방직용 섬유와 방직용 섬유의 제품		
ex 제50류	견. 다음을 제외함. 5001 누에고치(생사를 뽑는 데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 5002 생사(끈 것은 제외한다) 5003 견 웨이스트(waste)[생사를 뽑는 데에 적합하지 않은 누에고치, 실 웨이스트(waste), 가닛스톡(garnetted stock)을 포함한다] 5006 견사·견방사(소매용으로 한정한다), 누에의 거트(gut)	4단위 세번변경기준(제 5004호부터 제500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 2단위 세번변경기준 2단위 세번변경기준 2단위 세번변경기준 4단위 세번변경기준(제 5004호부터 제5005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
ex 제51류	양모·동물의 부드러운 털이나 거친 털·말의 털로 만든 실과 직물. 다음을 제외함. 5101 양모[카드(card)하지도 코움(comb)하지도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5102 동물의 부드러운 털이나 거친 털[카드(card)하지도 코움(comb)하지도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5103 양모·동물의 부드러운 털이나 거친 털의 웨이스트(waste)[실의 웨이스트(waste)를 포함하며, 가닛스톡(garnetted stock)은 제외한다] 5104 양모·동물의 부드러운 털이나 거친 털의 가닛스톡(garnetted stock)	4단위 세번변경기준(제 5106호부터 제5110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 2단위 세번변경기준 2단위 세번변경기준 2단위 세번변경기준 2단위 세번변경기준

HS 2017	품목명	품목별 원산지 규정
5105	양모·동물의 부드러운 털이나 거친 털[카드(card)하거나 코움(comb)한 것으로 한정하며, 코움(comb)한 단편 모양인 양모를 포함한다]	2단위 세번변경기준
5109	양모사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실(소매용으로 한정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제5106호부터 제5108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
ex 제52류	면. 다음을 제외함.	4단위 세번변경기준(제5205호부터 제520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
5201	면[카드(card)하지도 코움(comb)하지도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2단위 세번변경기준
5202	면 웨이스트(waste) [실 웨이스트(waste)와 가닛스톡(garnetted stock)을 포함한다]	2단위 세번변경기준
5203	면[카드(card)하거나 코움(comb)한 것으로 한정한다]	2단위 세번변경기준
ex 제53류	그 밖의 식물성 방직용 섬유, 종이실(paper yarn)과 종이실로 만든 직물. 다음을 제외함.	4단위 세번변경기준(제5306호부터 제5308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
5301	아마(생것이거나 가공은 하였으나 방적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아마의 토우(tow)와 웨이스트(waste) [실의 웨이스트(waste)와 가닛스톡(garnetted stock)을 포함한다]	2단위 세번변경기준
5302	대마(생것이거나 가공은 하였으나 방적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대마의 토우(tow)와 웨이스트(waste) [실의 웨이스트(waste)와 가닛스톡(garnetted stock)을 포함한다]	2단위 세번변경기준
5303	황마와 그 밖의 방직용 인피(靱皮)섬유[아마·대마·라미(ramie)는 제외하며, 생것이거나 가공은 하였으나 방적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이들 섬유의 토우(tow)와 웨이스트(waste) [실의 웨이스트(waste)와 가닛스톡(garnetted stock)을 포함한다]	2단위 세번변경기준

HS 2017	품목명	품목별 원산지 규정
5305	코코넛·아바카(마닐라마)·라미(ramie)와 그 밖의 식물성 방직용 섬유(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며, 생것이거나 가공은 하였으나 방직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이들의 투우(tow)·노일(noil)·웨이스트(waste) [실의 웨이스트(waste)와 가닛스톡(garnetted stock)을 포함한다]	2단위 세번변경기준
ex 제54류	인조필라멘트, 인조방직용 섬유재료의 스트립(strip)과 이와 유사한 것. 다음을 제외함.	4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106호부터 제5109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 5206호까지, 제5401호부터 제5402호까지, 제 5404호, 제5509호부터 제5510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
5401	인조필라멘트의 재봉사(소매용인지에 상관없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5402	합성필라멘트사(재봉사와 소매용은 제외하며, 67데시텍스 미만인 합성모노필라멘트를 포함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5403	재생·반(半)합성 필라멘트사[재봉사와 소매용은 제외하며, 67데시텍스 미만인 재생·반(半)합성 모노필라멘트를 포함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5404	합성모노필라멘트(67데시텍스 이상인 것으로서 횡단면의 치수가 1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방직용 합성섬유재료의 스트립(strip)이나 이와 유사한 것[예: 인조스트로(straw)](시폭이 5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5405	재생·반(半)합성 모노필라멘트(67데시텍스 이상인 것으로서 횡단면의 치수가 1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재생·반(半)합성 방직용 섬유재료의 스트립(strip)이나 이와 유사한 것[예: 인조 스트로(straw)](시폭이 5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5406	인조필라멘트사(재봉사는 제외하며, 소매용으로 한정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HS 2017	품목명	품목별 원산지 규정
ex 제55류	인조스테이플섬유. 다음을 제외함.	4단위 세번변경기준 (제5509호부터 제5510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
5501	합성필라멘트 토우(tow)	2단위 세번변경기준
5502	재생·반(半)합성 필라멘트 토우(tow)	2단위 세번변경기준
5503	합성스테이플섬유[카드(card)·코움(comb)이나 그 밖의 방적준비 처리를 한 것은 제외한다]	2단위 세번변경기준
5504	재생·반(半)합성 스테이플섬유[카드(card)·코움(comb)이나 그 밖의 방적준비 처리를 한 것은 제외한다]	2단위 세번변경기준
5505	인조섬유의 웨이스트(waste) [노일(noil)·실의 웨이스트·가닛스톡(garnetted stock)을 포함한다]	2단위 세번변경기준
5506	합성스테이플섬유[카드(card)·코움(comb)이나 그 밖의 방적준비 처리를 한 것으로 한정한다]	2단위 세번변경기준
5507	재생·반(半)합성 스테이플섬유[카드(card)·코움(comb)이나 그 밖의 방적준비 처리를 한 것으로 한정한다]	2단위 세번변경기준
ex 제56류	워딩(wadding)·펠트(felt)·부직포, 특수사, 끈·배의 밧줄(cordage)·로프·케이블과 이들의 제품. 다음을 제외함.	2단위 세번변경기준
5603	부직포(침투·도포·피복·적층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제57류	양탄자류와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바닥 깔개	2단위 세번변경기준
제58류	특수직물, 터프트(tuft)한 직물, 레이스, 태피스트리(tapestry), 트리밍(trimming), 자수 천	2단위 세번변경기준
제59류	침투·도포·피복하거나 적층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 공업용인 방직용 섬유제품	2단위 세번변경기준

HS 2017	품목명	품목별 원산지 규정
제60류	메리야스 편물과 뜨개질 편물	2단위 세번변경기준(제 5106호부터 제5109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 5206호까지, 제5401호부터 제5402호까지, 제 5404호, 제5509호부터 제5510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
제61류	의류와 그 부속품(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	2단위 세번변경기준(제 5111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8호부터 제 5212호까지, 제5407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 5512호부터 제5516호까지 또는 제60류의 것은 제외한다). 다만, 그 상품은 어느 한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단(또는 모양을 갖추도록 편직) 및 봉제되거나 달리 결합되어야 한다.
제62류	의류와 그 부속품(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은 제외한다)	2단위 세번변경기준(제 5111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8호부터 제 5212호까지, 제5407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 5512호부터 제5516호까지 또는 제60류의 것은 제외한다). 다만, 그 상품은 어느 한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단(또는 모양을 갖추도록 편직) 및 봉제되거나 달리 결합되어야 한다.

HS 2017	품목명	품목별 원산지 규정
제63류	제품으로 된 방직용 섬유외의 그 밖의 물품, 세트, 사용하던 의류·방직용 섬유제품, 냅마	2단위 세번변경기준(제 5111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8호부터 제 5212호까지, 제5407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 5512호부터 제5516호까지 또는 제60류의 것은 제외한다). 다만, 그 상품은 어느 한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단(또는 모양을 갖추도록 편직) 및 봉제되거나 달리 결합되어야 한다.
제12부 신발류·모자류·산류(傘類)·지팡이·시트스틱(seat-stick)·채찍·승마용 채찍과 이들의 부분품, 조제 깃털과 그 제품, 조화, 사람 머리카락으로 된 제품		
제64류	신발류·각반과 이와 유사한 것, 이들의 부분품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제65류	모자류와 그 부분품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제66류	산류(傘類)·지팡이·시트스틱(seat-stick)·채찍·승마용 채찍과 이들의 부분품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제67류	조제 깃털·솜털과 그 제품, 조화, 사람 머리카락으로 된 제품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제13부 돌·플라스터(plaster)·시멘트·석면·운모나 이와 유사한 재료의 제품, 도자제품, 유리와 유리제품		

HS 2017	품목명	품목별 원산지 규정
제68류	돌 · 플라스터(plaster) · 시멘트 · 석면 · 운모 나 이와 유사한 재료의 제품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제69류	도자제품	2단위 세번변경기준
제70류	유리와 유리제품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제14부 천연진주 · 양식진주 · 귀석 · 반귀석 · 귀금속 · 귀금속을 입힌 금속과 이들의 제품, 모조신변장식용품, 주화		
ex 제71류	<p>천연진주 · 양식진주 · 귀석 · 반귀석 · 귀금속 · 귀금속을 입힌 금속과 이들의 제품, 모조신변장식용품, 주화. 다음을 제외함.</p> <p>7101 천연진주나 양식진주(가공한 것인지 또는 등급을 매긴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실로 펜 것 · 장착되거나 세트로 된 것은 제외한다. 다만, 수송의 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실로 펜 것을 포함한다)</p> <p>7102 다이아몬드(가공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장착되거나 세트로 된 것은 제외한다)</p> <p>7103 귀석(다이아몬드는 제외한다)과 반귀석(가공한 것인지 또는 등급을 매긴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실로 펜 것 · 장착되거나 세트로 된 것은 제외한다. 다만, 등급을 매기지 않은 것으로서 수송의 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실로 펜 것을 포함한다)</p> <p>7104 합성 · 재생한 귀석이나 반귀석(가공한 것인지 또는 등급을 매긴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실로 펜 것, 장착되거나 세트로 된 것은 제외한다. 다만, 등급을 매기지 않은 것으로서 수송의 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실로 펜 것을 포함한다)</p>	<p>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p> <p>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p> <p>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p> <p>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p> <p>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p>

HS 2017	품목명	품목별 원산지 규정
7106	은(금이나 백금을 도금한 은을 포함하며, 가공하지 않은 것·반가공한 모양이나 가루 모양인 것으로 한정한다)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108	금(백금을 도금한 금을 포함하며, 가공하지 않은 것·반가공한 모양이나 가루 모양인 것으로 한정한다)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110	백금(가공하지 않은 것·반가공한 모양이나 가루 모양인 것으로 한정한다)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제15부 비금속(卑金屬)과 그 제품		
제72류	철강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제73류	철강의 제품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제74류	구리와 그 제품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제75류	니켈과 그 제품	4단위 세번변경기준
ex 제76류	알루미늄과 그 제품. 다음을 제외함.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601.20	알루미늄 합금	6단위 세번변경기준

HS 2017	품목명	품목별 원산지 규정
7605	알루미늄의 선	4단위 세번변경기준(제 7604호의 것은 제외한다) 또는 당사국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제78류	납과 그 제품	4단위 세번변경기준
제79류	아연과 그 제품	4단위 세번변경기준
제80류	주석과 그 제품	4단위 세번변경기준
제81류	그 밖의 비금속(卑金屬), 서멧(cermet), 이들의 제품	6단위 세번변경기준
제82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공구·도구·칼붙이·스푼·포크, 이들의 부분품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제83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각종 제품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제16부 기계류·전기기와 이들의 부분품, 녹음기·음성 재생기·텔레비전의 영상과 음향의 기록기·재생기와 이들의 부분품·부속품		
제84류	원자로·보일러·기계류와 이들의 부분품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제85류	전기기와 그 부분품, 녹음기·음성 재생기·텔레비전의 영상과 음성의 기록기·재생기와 이들의 부분품·부속품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제17부 차량·항공기·선박과 수송기기 관련품		
제86류	철도용이나 궤도용 기관차·차량과 이들의 부분품, 철도용이나 궤도용 장비품과 그 부분품, 기계식(전기기계식을 포함한다) 각종 교통신호용 기기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HS 2017	품목명	품목별 원산지 규정
ex 제87류	철도용이나 궤도용 외의 차량과 그 부분품·부속품. 다음을 제외함.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701	트랙터(제8709호의 트랙터는 제외한다)	당사국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702	10인 이상(운전자를 포함한다) 수송용 자동차	당사국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703	주로 사람을 수송할 수 있도록 설계된 승용자동차와 그 밖의 차량[제8702호의 것은 제외하며, 스테이션왜건(station wagon)과 경주용 자동차를 포함한다]	당사국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704	화물자동차	당사국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705	특수용도차량(주로 사람이나 화물 수송용으로 설계된 것은 제외한다)[예: 구난차(breakdown lorry)·기중기차(crane lorry)·소방차·콘크리트믹서 운반차·도로청소차·살포차·이동공작차·이동방사선차]	당사국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제88류	항공기와 우주선, 이들의 부분품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제89류	선박과 수상 구조물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제18부 광학기기·사진용 기기·영화용 기기·측정기기·검사기기·정밀기기·의료용기기, 시계, 악기,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제90류	광학기기·사진용 기기·영화용 기기·측정기기·검사기기·정밀기기·의료용 기기,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HS 2017	품목명	품목별 원산지 규정
제91류	시계와 그 부분품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제92류	악기와 그 부분품과 부속품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제19부 무기·총포탄과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제93류	무기·총포탄과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제20부 잡품		
제94류	가구, 침구·매트리스·매트리스 서포트 (mattress support)·쿠션과 이와 유사한 물품, 다른 류로 분류되지 않은 램프·조명기구, 조명용 사인·조명용 네임플레이트 (name-plate)와 이와 유사한 물품, 조립식 건축물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제95류	완구·게임용구·운동용구와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ex 제96류	잡품. 다음을 제외함. 위생 타월(패드)·탐폰(tampon), 유아용 냅킨·냅킨라이너(napkin liner)와 이와 유사한 물품(어떤 재질이라도 가능하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제21부 예술품·수집품·골동품		

HS 2017	품목명	품목별 원산지 규정
제97류	예술품 · 수집품 · 골동품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